

붙임1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양식

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공공기관 명	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·외국인청					
평가기관	(주)키삭	평가기간	2023.09.11 ~ 2023.10.20	평가예산 <input type="checkbox"/> 1천만원 미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1천만원 이상~3천만원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3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5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억원 이상		
평가대상시스템 개요	시스템명	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(BASE)		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	2023.06.23. ~ 2023.12.20	
	추진개요 및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확한 출입국 외국인의 생체정보 분석과 신원 확인요청 적시 대응 체계 확보를 통한 바이오 정보 전문 분석시스템의 효율적 생체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 ○ 현재의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(BASE)의 생체정보 분석 정확성 확보 및 신원 확인요청 대응 기반 확보 				
	추진성격	대상여부	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 또는 수반될 것으로 예상		추진예산	₩ 928,400,000 원
		추진주체	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·외국인청 정보관리과			
		추진근거	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조, 제38조		추진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구축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변경(고도화) <input type="checkbox"/> 운영
신기술 유형	인식률이 향상된 최신 지능형 알고리즘 도입으로 생체정보 검색·분석 정확성 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규 알고리즘 메모리DB 구축 ○ 신규 알고리즘 검색, 분배, 특징점 추출 및 적재 프로그램 개발 ○ 신규 알고리즘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BASE 프로그램 개선 ○ 신규 알고리즘으로 기존 보유 특징점 추출 및 DB 마이그레이션 작업 수행 					
주요내용	정확한 출입국 외국인의 생체정보 분석과 신원확인 요청 적시 대응 1. 생체 정보 기반 신원확인 - 출입국 심사 시 위조문서 및 타인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,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신원 확인 2. 외국인 바이오정보의 확인					
운영체계 변경내용 (변경인 경우)	1. 법무부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체 4개년('19 ~ '22년) 간 추진한 사업의 기술결과물인 알고리즘 도입 2. 특징점 추출 및 적재 시스템 개선, 모니터링 화면 개발					

개인정보 파일 개요	파일명	정보주체 수	개인정보 항목	제3자 제공	개인정보 처리 목적
	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 2항에 의거하여 비공개	-	-	-	-
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	<p>1. 개인정보 처리 업무흐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스템 구성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<p>2. 개인정보 흐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스템 구성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				

영 향 평 가 기 준	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	구분	평가항목	변경 전	변경 후	조정사유
		제외	1.1.1 ~ 1.4.2	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9건	-	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
		변경	4.2.2	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 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<u>가 상사설망(VPN) 또는 전용선 등</u>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?	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 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 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?	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(2023.09.15. 개정시행)
		변경	4.2.3	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 정, 공개된 무선망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 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개인정보취급자 PC, 모바일 기 기, <u>관리용 단말기</u> 등에 보호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?	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 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 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처리시스템, 개인정보취급 자 PC, 모바일 기기 등에 보호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?	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(2023.09.15. 개정시행)
		변경	4.3.1	<u>고유식별정보, 생체인식정보, 비 밀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</u> 를 저 장하는 경우, 안전한 방식으로 암호화 저장하도록 계획하고 있 습니까?	<u>생체인식정보, 비밀번호 등 인 증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중 요정보</u> 를 저장하는 경우, 안전 한 방식으로 암호화 저장하도 록 계획하고 있습니까?	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(2023.09.15. 개정시행)
		변경	4.3.3	고유식별정보, 생체인식정보, 비 밀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정 보통신망을 통해 송·수신하거 나 <u>보조저장매체</u> 등을 통해 전 달하는 경우 암호화하도록 계획 하고 있습니까?	고유식별정보, 생체인식정보, 비밀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·수신하 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<u>알고리즘</u> 으로 암호화하도록 계 획하고 있습니까?	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(2023.09.15. 개정시행)
		변경	4.4.1	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을 계정, 접속일시,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,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, 수행업무 등 필요한 사항 이 모두 기록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?	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계정, 접속일시, 접속지 를 알 수 있는 정보,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, 수행업무 등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록되도 록 계획하고 있습니까?	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(2023.09.15. 개정시행)
		변경	4.4.2	개인정보의 유출·변조·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정기 적으로 점검하고,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확 인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?	개인정보의 유출·변조·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 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<u>1회 이상</u> 점검하고, <u>개인정보</u> <u>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</u> 그 사유를 확인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?	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(2023.09.15. 개정시행)
		제외	5.1 5.2 5.4	CCTV 활용기술 관련 5건 RFID 활용기술 관련 7건 위치정보 활용기술 관련 2건	-	해당 없음
		주요 평가기준	○ 생체인식정보(원본정보 및 특이정보) 관리 방안			
질의문	평가의견			개선사항		
4.3.1, 5.3.1	- 기술개발 관련 정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					

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·평가		<p>1.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(BASE)의 해당 개인정보파일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(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), 제38조(생체정보의 제공 등)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 시 요청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공하고 있고,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음</p> <p>2.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한 내역을 보관하고, 접근 통제 시스템을 설치·운영중이며, 취약점 진단 체계 구축,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, 개인정보처리단말기에 악성프로그램을 점검, 치료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, 관리자 로그인 알림 보호대책은 적용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</p>			
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	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	○ 주요 개선조치 방안			
		개선과제	개선사항	법적 준거성	수행시기
		- 기술개발 관련 정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			
		- 기술개발 관련 정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			
		관리자 로그인 알림 적용	관리자 로그인 시 알림(이메일 등) 적용을 권고함	권장	장기
	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	해당사항 없음			
평가결과		<p>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·외국인청 『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(BASE) 고도화 사업』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1)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, 2)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, 3)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, 4) 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분석·평가를 실시하였음</p> <p>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는 침해요인이 없음</p> <p>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기술개발 관련 정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</p> <p>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보호는 기술개발 관련 정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</p>			

※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중 일부 기술개발 관련 정보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하였음